

방통위, 방문진 검사·감독 결과 발표

- MBC 사장 추천 절차, MBC 사장 특별감사시 방문진 이사 파견, MBC·관계사 경영 관리·감독 및 업무추진비 집행 등 분야에서 문제점 확인
- 방문진, 방통위의 검사·감독 불인정 및 현장조사 거부 등 방통위의 검사·감독 방해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직무대행 김효재, 이하 방통위)는 방송문화진흥회법 제16조 및 민법 제37조 등에 따라 방송문화진흥회(이사장 권태선, 이하 방문진)의 MBC 경영에 대한 관리·감독과 방문진 사무집행에 대하여 검사·감독을 7월초부터 약 한달 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를 발표하였다.

MBC 경영 관리·감독 분야

첫째, MBC 사장 추천 절차 및 심의를 부적정하게 처리하였다.

방문진은 MBC 사장 후보자가 수년전 벤처기업으로부터 거액의 공짜 주식을 받았다는 진정서가 제출되었는데도 이에 대한 검증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본인 해명만 듣고 해당 후보자를 MBC 사장 내정자로 선정하였으며, MBC 특별감사 결과로 주식 명의신탁 행위에 대해 위법성*이 있음을 확인하고도 방문진은 아무런 조치(경고 등)를 취하지 않았다.

* 해당 후보자는 취임 후 후배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해 본인 명의를 대여했다고 해명하였지만 2016년 당시 모회사 PD가 공짜 주식 수수 혐의로 사내 감사를 받을 때는 본인 소유라고 하여 업무방해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23.8.11.)

또한, MBC 사장 후보자 지원서에 영업이익이 허위로 기재되어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논란이 공개적으로 해소되지 않고 MBC 사장 선임절차가 진행되었다.

둘째, MBC 감사업무 독립성을 저해하였다.

감사는 업무의 특성상 이해관계자들로부터 중립적 영역을 유지하여 감사의 독립성을 확보해야 한다.

그러나, 방문진 이사장은 MBC 사장에 대한 MBC 자체 특별감사에 방문진 이사를 이사회 논의조차 없이 관찰자(옵저버) 명목으로 참여시켜 MBC 감사업무의 독립성을 저해하였다.

셋째, MBC와 관계사의 투자 등 경영관련 관리와 감독을 소홀히 하였다.

MBC와 관계사는 문화방송 관리지침에 따라 중요자산 취득이나 중장기 투자 및 개발계획 등에 대해 방문진 결의사항 또는 사전협의사항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그러나, MBC플러스는 '18년 스매시파크 사업을 추진하면서 방문진과 사전협의를 거치지 않았고, MBC는 '19년 미국 라스베이거스 부동산 펀드에 투자를 하면서 방문진에 보고하지 않는 등 관리지침을 위반하였다.

이에 대해 방문진은 손실규모가 큰 MBC와 MBC플러스의 사업이 관리지침을 위반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경고 등)를 취하지 않는 등 MBC 경영에 대한 관리·감독을 소홀히 하였다.

이외에도, 방송의 공정성 실현을 위한 근로환경 조성에 대한 관리·감독 소홀, MBC 공적책임 실현을 위한 관리·감독 부실 및 MBC 임원 성과급 지급 기준 개선 필요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다.

방문진 사무 집행 분야

첫째, 방송진흥 공모사업에 대한 표준화된 매뉴얼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방문진은 '18년 내부감사를 통해 공모사업의 관리와 운영에 대해 개선

이 필요하다라는 지적을 받고도 공모사업 매뉴얼 작성 등에 대한 개선을 현재까지 조치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공모사업의 다양성과 특수성, 예산여건 등을 고려하여 지원대상·자격·내용 등 지원요건과 선정 절차·기준·방법 등 심사사항 및 선급금 지급기준 등이 포함된 매뉴얼을 마련하여 공익목적 사업추진에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둘째, 업무추진비를 부적정하게 사용한 사례가 있었으며 업무추진비 집행기준도 정비할 필요가 있다.

방문진 이사는 법령과 정관에서 주어진 의무와 역할을 이행하기 위해 업무추진비를 집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주말·공휴일·명절 등에 업무추진비를 사용하고, 업무수행과 관련이 없어 보이는 지역에서 업무추진비를 사용하는 등 업무추진을 위한 사용으로 보기 어려운 사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청탁금지법 상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등 예외사유의 기준인 3만원 이하의 음식물을 벗어난 업무추진비 사용 사례가 다수 확인되어 사용대상의 직무관련성 여부에 따라 청탁금지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

- 공휴일 4건, 명절 2건, 주말 12건, 업무수행과 관련이 없어 보이는 거주지 근처 등 42건, 인당 3만원 초과사용 188건 등 총 33,839천원

셋째, 홈페이지 관리를 부적정하게 운영하였다.

'19년 방문진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마약 판매 글이 게시되어 약 3개월간 노출되는 문제가 발생하였다.

이에 대해 방문진은 해당 글을 모두 삭제 처리하고 금칙어 설정을 통해 동일한 사건이 재발되지 않도록 철저히 하겠다고 하였으나, 다양한 의견수렴과 소통 공간의 순기능이 있는 자유게시판을 폐쇄하는 조치를 취하여 국민과의 소통창구가 원천 차단되었다.

그리고, 예산 편성 및 집행과 관련하여 비상임 임원 수당 과다 지급, 비상임 임원 회의비 관련 규정 개선에 대한 개선 필요성과, 방문진 내부감사 규정 준수 및 회계업무 투명성 확보를 위한 내부규정 개선 등 내부통제시스템 기능 강화 필요성이 지적되었다.

검사·감독 방해

방문진은 방송문화진흥회법 제16조 및 민법 제37조 등에 따른 방통위의 검사·감독을 방해하였다.

방문진은 방통위의 검사·감독에 대해 '17년 검사·감독 당시와 유사하게 “방통위 검사·감독권은 인정하지 않되, 통상 자료 제출 협조임을 명시하여 요청 자료를 제출함”으로 의결하여 요청한 자료의 일부만을 제출하였으며, 이사회 비공개 속기록 및 MBC 경영 관련 자료 등은 제출하지 않았다.

또한, 방문진은 2일간 진행된 현장조사에서도 추가자료 제출 요청 및 관련자료 확인 등을 방문진 이사회 의결사항을 사유로 거부하는 등 검사·감독 수행 업무에 차질을 초래하고 검사·감독을 방해하였다.

이와 같이 방문진이 방통위의 검사·감독을 거부함에 따라 검사·감독에 필요한 자료 확보에 한계가 있었다.

향후 방통위는 검사·감독 결과 보고서를 방문진에 통보하여 주요 문제점에 대한 개선과 법령 준수 등을 촉구할 예정이다.

붙임 : 방문진 검사·감독 결과 보고서 요약 1부. 끝.

담당 부서	방송정책국 방송정책기획과	책임자	과장	이 현 (02-2110-1410)
		담당자	사무관	권혁준 (02-2110-1415)



1 MBC 경영 관리·감독 분야

방문진은 MBC의 최대출자자로서 「방송문화진흥회법」 및 「상법」 등의 규정에 따라 MBC의 공적책임, 기본운영계획, MBC 이사와 감사의 선임 및 해임, 결산 승인, 경영평가 등 MBC 경영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감독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1 MBC 사장 추천 절차 및 심의 부적정

- 방문진은 MBC 사장 임기 만료('23. 2. 23.) 이전에 차기 MBC 사장 선임을 위한 일정 및 절차를 심의·의결함('23. 1. 10.)

**가. MBC 사장 내정자 선정 심의 부적정**

- MBC 사장 후보자가 수년전 벤처기업으로부터 거액의 공짜 주식을 받았다는 진정서가 제출되었는데도 이에 대한 검증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본인 해명만 듣고 해당 후보자를 MBC 사장 내정자로 선정함
- 취임 이후에도 사장의 자격 여부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음

※ 해당 후보자는 취임 후 후배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해 본인 명의를 대여했다고 해명하였지만 2016년 당시 모회사 PD가 공짜 주식 수수 혐의로 사내 감사를 받을 때는 본인 소유라고 하여 업무방해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23.8.11.)

- MBC 특별감사 결과로 주식 명의신탁 행위에 대해 위법성이 있음을 확인하고도 이사회는 아무런 조치(경고 등)를 취하지 않음
- 방문진 이사회는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는 공영방송사 사장에 도덕적 흠결이 있는 후보자를 내정하여 MBC의 공공성과 신뢰성을 저하시키는 등 MBC 사장 추천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함

나. MBC 사장 후보자 지원서 사실관계 확인 미흡

- '23. 2. 7. 정기이사회에서 MBC 사장 후보자가 제출한 지원서에 영업이익이 허위로 기재되어 있다는 문제가 제기됨

< MBC 연도별 감사보고서 및 후보자 지원서 영업이익 비교(단위 :억 원) >

구 분	2020년	2021년	2022년
감사보고서 기준	40	684	566
후보자 지원서	240	1090	840
차액	+200	+406	+274

자료 : 연도별 감사보고서 및 방문진 이사회 속기록 재구성

- 하지만 방문진 이사회에서 후보자 지원서의 사실관계를 확인 했다는 내용을 속기록에서 확인할 수 없는 등 지원서 허위기재 논란이 공개적으로 해소되지 않고 이후 선임절차가 진행됨
- 향후 서류 검증절차 등을 강화하여 MBC 사장 선임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2 MBC 감사업무 독립성 저해

- 방문진 정관은 방문진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방문진에 이사회를 두도록 규정하고 MBC 사장 추천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이사회 사전 의결을 거치도록 규정함

- 방문진은 MBC 사장 후보자의 비위 의혹 등 선임과정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중요사항에 관한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해서는 이사회 논의 등을 거쳐야 함
- 한편, 방문진은 MBC 최대 주주로서 MBC 임원 선임 등 상당한 권한을 보유하여 MBC 경영 전반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고, MBC 감사 업무에 참여할 경우 이해관계로 인한 영향력을 배제할 수 없어 감사 직무의 독립성 및 공정성 저해 가능성이 높음
- 그럼에도 방문진 이사장은 2023. 2. 24. MBC 사장에 대한 MBC 자체특별감사에 방문진 이사를 이사회 논의조차 없이 관찰자(옵저버) 명목으로 참여시켜 감사업무의 독립성을 저해하고 공정성이 의심되는 상황을 초래함

3 MBC와 관계사의 투자 등 경영 관련 관리·감독 소홀

- 방문진은 「방송문화진흥회법」과 ‘문화방송 관리지침’에 따라 MBC와 관계사 경영에 대한 관리·감독 업무를 수행함
- MBC와 MBC플러스는 방문진 이사회 결의나 사전 협의, 보고를 거치지 않고 사업을 추진하는 등 ‘문화방송 관리지침*’을 위반함
 - * 방문진은 MBC와 관계사 관리를 위해 업무유형에 따라 결의사항, 사전협의사항, 보고사항으로 구분
 - MBC플러스는 '18년 스매시파크(실내 스포츠 테마공원) 사업을 추진하며 사전협의를 거치지 않았으며, MBC는 '19년 미국 라스베이거스 부동산 펀드 투자에 대해 방문진에 보고하지 않았음
- 방문진은 미국 라스베이거스 부동산 펀드와 스매시파크 등의 사업

손실규모가 커져 문제가 제기된 이후에야 MBC 감사('21.6.10, '22.2.22)를 통해 현황을 파악하고, MBC와 MBC플러스에 후속조치를 요구함

- 게다가 방문진은 MBC와 MBC플러스의 문화방송 관리지침 위반에 대해 아무런 조치(경고 등)를 취하지 않는 등 MBC 경영에 대한 관리·감독을 소홀히 함
- 또한, MBC플러스는 스매시파크사업 추진시 여수점의 경우 계약 사항 확인, 보증보험 연장 등을 조치하지 않았으며, 인천점의 경우 채무변제능력을 상실한 것으로 판단되는 업체에 30억원을 대여함
 - 따라서, MBC플러스는 MBC플러스 이사회 의결없이 스매시파크 사업을 진행하였고, 사업이 지연되는데도 이에 대한 조치를 취하지 않거나 사업권이 없는 업체로부터 사업권을 양수하는 등 최소 98억 원에서 최대 198억 원의 손실이 발생하였는데도 방문진은 이에 대한 관리·감독을 소홀히 함

4 방송의 공정성 실현을 위한 근로환경 조성에 대한 관리·감독 소홀

- MBC는 2012년, 2017년 두 차례 파업 이후 회사 구성원 간 갈등이 지속되었고, 2017년 파업 후 경영진이 교체된 후에는 파업불참자에 대한 보복성 징계 내지 부당전보 행위가 발생하면서 반복되는 소송 및 근로환경에 대한 문제가 계속 제기됨
- 법원은 MBC가 '17년 '정상화위원회'의 조사 행위, 부당전보 행위 등에 대해 MBC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는 한편, 검찰은 '23년 4월 노동조합법위반 등으로 그 당시 사장 등을 불구속 기소함

- (민사소송 결과) ①정상화위 조사 과정에서 비위행위를 자백하도록 강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인격권, 자기결정권 등을 침해 ②특파원 조기 복귀는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사회상규상 도저히 용인될 수 없음이 분명 ③뉴스데이터팀 전보는 기사를 본연 업무에서 배제하려는 의도하에 기자로서 업무수행을 할 수 없게하는 행위로 기자의 인격적 법익 침해
- (검찰수사 결과) 2017년 파업 당시 파업에 불참한 특정 노조 또는 비노조원 기자들을 주요 업무에서 배제하고 인사 불이익을 준 혐의 등에 대해 노동조합법위반으로 기소

※ 손해배상 관련 민사소송은 2021.11월 서울고등법원, 2022. 6월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

- 방문진은 노사 갈등이 지속되고 있는데도 MBC에게 노사 갈등에 대한 적극적인 해결 방안 모색을 요구하는 조치도 없는 등 MBC 노사관계에 대한 관리·감독을 소홀히 함

5 MBC 공적책임 실현을 위한 관리·감독 소홀

- MBC가 도쿄올림픽 개막식 중계('21. 7. 23.)에서 부정적인 이미지를 노출하고, 부적절한 자막을 고지하는 등의 방송을 하였음에도 방문진 이사회는 MBC의 공적책임에 대한 관리·감독이 부실하였음
 - '21. 9. 7.에서야 유사 방송사고 재발방지 후속조치 계획을 보고 받고, MBC 사장에 대한 경고 결의안을 부결시킴
 - KT 사장 응모 지원자 오보(동명 국회의원)를 한 뉴스데스크 ('23. 3. 30.)와 관련하여 보도본부장 참석 요청 긴급안건을 채택하지 않음
- MBC가 도쿄올림픽 이후 방송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한 조치를 마련하였다고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 여전히 방송심의규정을 위반하여 법정제재(주의 3건) 또는 행정지도(권고 13건, 의견제시 16건)를 받고 있는 등 이에 대한 개선은 미흡한 실정임

6 MBC 임원 성과급 지급 기준 개선 필요

- MBC 임원에 대한 보수 등은 방문진 ‘문화방송 관리지침’ 제4조 제2항에 따라 방문진 이사회 결의사항임
- 그러나 '21년도에는 성과급 지급 기준 등 객관적 근거 없이 MBC 임원 성과급으로 300% 지급을 결의함
- 한편, '22년도에는 방문진 주요 추진과제로 ‘MBC 임원 성과급 기준’을 마련·적용하여 MBC 임원 성과급으로 318% 지급을 결의하였으나,
 - '22년도 주요 성과 목표달성률 등을 '21년도와 비교 시, '22년도 성과급이 18%p 높은 구체적 근거가 확인되지 않음
- 방문진은 MBC 임원 성과급 지급 결의 시, 목표달성률 등 주요 성과를 반영하여 합리적이고 일관성있게 성과급이 지급될 수 있도록 기준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2 방송문화진흥회 사무 집행 분야

방문진은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이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및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등에서 명시한 공공기관에 해당함

또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및 「법인세법 시행령」에 따른 ‘공익법인등’에 해당하는 등 다양한 공익목적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특수법인이므로 예산의 편성·집행, 회계 및 복무관리 등에 있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에 준하는 기준을 갖추고 시행할 필요가 있음

1 공모사업의 표준화된 매뉴얼 필요

- 방문진은 방송진흥을 위한 콘텐츠 제작지원 사업, 학술 진흥사업 및 문화예술행사 지원사업 등의 지원대상자를 공모를 통해 선정함
- 방문진 내부감사 결과, ‘공모사업 매뉴얼 작성’ 지적에 대한 조치실적이 없었으며, 진흥사업의 공익적 목적에 부합하도록 다양한 분야의 다수에게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확인됨
- 방문진의 공모사업 관련 예산은 매년 증가하는 한편, 공모사업의 관리·운영에 대해 지속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있음
- 공모사업의 다양성과 특수성, 예산여건 등을 고려하여 지원요건과 심사사항 등이 포함된 표준화된 매뉴얼을 마련하여 공익목적 사업추진에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2 업무추진비 사용 부적정 및 집행기준 정비 필요

- 「방문진 임직원 행동강령」에 따르면 방문진 임직원은 업무수행을 위한 예산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않도록 규정되어 있고, 방문진 이사는 법령과 정관에서 주어진 의무와 역할을 이행하기 위해 업무추진비를 사용하여야 함
- 주말, 공휴일, 명절 및 거주지 인근 집행 등 업무추진을 위한 사용으로 보기 어려운 사례가 일부 확인됨
- 또한, 청탁금지법 상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등 예외사유의 기준인 3만 원 이하의 음식물을 초과한 업무추진비 사용 사례도 다수 확인됨

※ 사용대상의 직무관련성 여부에 따라 청탁금지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음

- (휴일 등) 공휴일 4건(216,580원), 명절 2건(73,600원), 주말 12건(965,000원) 집행
- (업무수행 무관 의심 사례) OOO(33건, 3,852,500원), OOO(9건, 495,280원) 등 총 42건(4,347,780원)
- (인당 3만 원 초과 사용) OOO 62건(8,903,600원), OOO 40건(6,247,800원), OOO 28건(4,347,100원), OOO 22건(3,173,000원) 등 총 188건(28,238,700원)

- '17년 내부감사 결과 업무추진비 휴일(공휴일) 및 심야시간대 사용에 대해 구체적으로 업무추진비 집행지침을 정비하도록 권고하였음에도,
 - 방문진은 '22.6월 지침 개정 시 휴일(공휴일) 및 심야시간대 사용에 대해 구체적으로 정비하지 않음

3 예산 편성 및 집행 부적정

가. 비상임 임원 수당 과다 지급

- 「공공기관의 예산편성 지침」에 따르면 비상임이사와 비상임 감사의 수당은 월정액 또는 회의참석수당 등을 포함하여 연 30백만 원을 상한으로 하도록 되어 있음
- 방문진은 '18.1월부터 '23.7월까지 비상임 이사 1인당 지급한 수당은 연평균 4,840만원에 달하며 최근 관련 비용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
- 따라서, 비상임 이사에게 월정액 또는 회의참석 수당 등을 포함한 수당이 과도하게 집행되지 않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음

< 비상임 이사 1인당 월정액 및 회의참석 수당 지급내역 >

구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평균
월정액	3,847	3,769	3,750	3,925	4,253	4,657	4,034
연간지급액	46,164	45,228	45,000	47,100	51,036	55,884	48,402
초과비율	53.9%	50.8%	50.0%	57.0%	70.1%	86.3%	61.3%

자료 : 방문진 제출자료 재구성 / * 2023년은 1월~7월분 금액으로 환산함

나. 비상임 임원 회의비 관련 규정 개선 필요

- 방문진은 정관 제26조와 ‘보수규정’ 제36조에 따라 정기회의, 임시회의, 소위원회 회의, 간담회, 워크숍, 심사회의 등 회의 참석 시 1회당 30만원(서면회의시 15만원)을 지급하고 있음
- '18년 방문진 내부 감사결과에 따르면 회의가 중복된 일수는 12일이며, 회의비가 동일인에게 같은 날 2회 이상 지급된 경우는 40회로 확인되나 아직까지 중복지급 관련 규정은 없음
- 방문진은 회의수당이 같은 날 수차례 중복 지급되지 않도록 회의수당 지급 기준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4 내부통제시스템 기능 강화 필요

가. 방문진 내부감사 규정 준수 필요

- 방문진 「감사규정」에 따르면 당해 연도 감사기본계획에 의해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내부감사를 실시해야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그러나 방문진은 '19년부터 '21년까지 3년간 감사규정에 따라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감사를 실시하지 않았음
- 그러므로 내부규정을 준수하여 매년 감사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방문진의 업무 및 회계에 관하여 연 1회 이상 독립적으로 내부감사를 철저히 시행하여 내부통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나. 회계업무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내부규정 개선 필요

- 방문진 「회계규정」에 따르면 계약은 일반경쟁계약을 원칙으로 하고 계약의 성질 또는 목적에 의하여 경쟁을 할 수 없거나 부득이한 경우 지명 경쟁계약이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또한 방문진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내부지침」에 사용 제한업종이 나열되어 있고, 업무추진비로 물품구매는 제한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방문진 내부감사 결과, 용역·물품 계약 시 명확한 기준 없이 일반경쟁계약이 아닌 수의계약을 체결한 사례 및 업무추진비로 물품을 구입하여 지적받은 사례 등이 확인됨
- 따라서, 공익목적 사업추진에 공정성과 객관성이 확보되도록 수의계약 요건을 강화하는 등 「회계규정」을 개선할 필요가 있으며, 사용제한 범위를 엄격히 관리하고 명확히 규정하는 등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내부지침」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5 홈페이지 관리 운영 부적정

- 방문진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XXX팔아요’, ‘XXXX후불제’ 등의 제목으로 '19년 9월부터 12월까지 총 13개의 마약 판매 글이 게시되었으나 관리를 하지 않아 약 3개월 동안 그대로 노출되고 있었음
- 이에 대해 방문진은 해당 글을 모두 삭제 처리하고 금칙어 설정을 통해 동일한 사건이 재발되지 않도록 철저히 하겠다고 하였으나,
 - 다양한 의견수렴과 소통 공간의 순기능이 있는 자유게시판을 폐쇄하는 조치를 취하여 국민과의 소통창구가 원천 차단되는 상황이 초래됨
- 방문진은 공정하고 건전한 방송문화의 진흥과 공공복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특수법인이며 다양한 공익목적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므로 홈페이지를 보다 철저히 관리·운영할 필요가 있음

6 방통위 검사·감독 거부 및 방해

- 방통위는 방문진의 주무관청으로서 공영방송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방문진의 MBC 경영에 대한 관리·감독, 방송문화진흥자금의 운용·관리 등 사무 전반에 대해 검사·감독을 실시함('23. 7~8월)
- 방문진은 '23. 7. 17. 제9차 임시이사회에서 "방송통신위원회의 검사·감독권은 인정하지 않되, 통상 자료 제출 협조임을 명시하여 요청 자료를 제출함"으로 의결하여, 요청 자료 일부만을 제출하고 현장조사도 거부하는 등 사실상 방통위의 방문진에 대한 검사·감독을 방해하였음
- 이와 같이 방문진이 방통위의 검사·감독을 거부함에 따라 검사·감독에 필요한 자료 확보에 한계가 있었음